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8. 선고 2019고단 428 판결 협박,폭행,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428 협박, 폭행,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이동우(공판)

판결선고 2019. 5. 8.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7.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B이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

행을 저질렀다.

###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알지.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가만 히 두지 않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B의 딸인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을 협박하고, 2018.5. 16. 0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과 함께 'B 아시나요 사진 몇장 전송합니다 이제떠나주세요 이제 제꺼입니다 증거사진들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51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 안하고

계속 피하면 이건 협박이에요. 큰이고, 성남오 빠구 다 연락할거예요 또한 사진 있는거 다보내고 음성 화일까지 다 보낼거에요 사진 안 보여준거 더 있어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3경 피해자 B의 얼굴이 드러난 상반신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및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 B의 가족들에게 위 나체 사진들을 마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보낼 듯이 피해자 B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 2. 폭행

2022-10-07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B 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일해야 된다. 들어가겠 다.'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당 겨,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 3. 모욕

피고인은 2018. 6. 12. 2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F' 계정으로 G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사기죄로 고소 중인 파렴치한"이라는 방을 만들어 피해자 B의 전신 사진과 함께 '너는 창녀보다도 더 더러운 여자입니다.', '너 대신 갚아준 돈이 얼만데 도합 3천이 넘는다. 그 잘난 니 불륜남 H한데 다 갚아달라구 해라. I 아파트 사는 놈 다 알구 있지만 내가 다 공개는 안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의 전 부인인 J의 계정으로 G 클라우드에 로그인 하여 위 "사기죄로 고소 중인 파렴치한"의 게시글과 사진을 J의 계정으로 복사한 후, 피해자 B의 딸 C의 클라우드 맴버인 K, L 등을 위 J의 계정으로 초대하여, 글과 사진을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 4.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 06: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불상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불상 여성의 허리, 엉덩이 등이 나체로 드러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2018. 5. 31. 16: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M 계정으로 '니네 엄마는 창녀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여성이 손으로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음부 사진, 불상 여성의 허리, 엉덩이 등이 나체로 드러난 사진, 불상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각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 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협박, 폭행,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딸에게까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파사 하지연